

# 行政統制의 理論과 實際(Ⅱ)\*

## —韓國의 統制制度와 그 效果分析—

安 海 均\*\*

<目次>	
I. 序 言	2. 司法府에 의한 行政統制
II. 行政統制의 必要性과 概念	3. 國民에 의한 行政統制 (이상 지난호 게재분)
1. 行政統制의 必要性	
2. 行政統制의 概念	
III. 行政統制의 理論的 背景	V. 韓國行政의 內部統制裝置와 機能分析
1. 行政統制와 行政責任	1. 監查院監查에 의한 行政統制
2. 內的 責任論	2. 行政監查에 의한 行政統制
3. 外的 責任論	VI. 制度와 效果分析에 대한 評價
IV. 韓國行政의 外部統制裝置와 機能分析	1. 外部統制裝置의 評價
1. 議會에 의한 行政統制	2. 內部統制裝置의 評價
	VII. 結 言

### V. 韓國行政의 內部統制裝置와 機能分析

外部統制裝置가 制度의 으로 아무리 잘 具備되어 있다 하더라도 官僚들이 가진 專門性과 對等한 位置에서 統制機能을 발휘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行政權限이 계속 强化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北韓과 對峙하고 있는 狀況에서 대부분의 情報가 秘密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外部機關에 의한 統制는 커다란 制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行政機關 內部에서 官僚 자신들이 自律의 으로 統制해 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行政의 自己統制는 결국 外部統制의 制約과 缺陷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있다.

內部統制의 制度의 裝置로는 行政全般을 指揮·監督하는 行政首班, 職務監察을 주로 하는 司正委員會, 職務監察과 會計監查를 주로 하는 監查院이 있고 企劃과 政策을 統制하는 國務總理室, 事業計劃의 運營과 豫算을 統制하는 經濟企劃院, 人力管理와 行政事務를 관掌

\* 이 연구는 峴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研究費支援에 의해遂行되었다.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하는 總務處 및 각 中央部處의 自體監査室이 있다.<sup>(73)</sup>

本研究에 서는 이 가운데 監査院監査와 行政監査를 주요 分析의 對象으로 한다.

### 1. 監査院監査에 의한 行政統制

憲法機關인 監査院에 의한 統制는 行政機關 自體의 觀點에서 보면 外部統制에 해당하지만 監査院은 大統領에 소속하는 機關이란 점에서 内部統制裝置에 속한다.

#### 1) 監査院의 組織

5·16 軍事 革命期間 중 監査院이 發足하기까지 監査制度는 會計監査와 職務監察擔當機關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會計監査는 制憲憲法의 規定에 의해 審計院에 위임되었는데<sup>(74)</sup> 審計院은 大統領 直屬機關으로서 外部機關에 대하여 職務上 獨立的인 地位에 있었다. 그후 5·16 革命이 일어나면서 國家再建最高會議에 소속되었다가 1963年 3月 監査院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職務監察은 公務員의 紀綱을 확립하고 違法不當行爲를 監察하기 위한 制度로서 1950年 설치된 監察委員會가 담당하였다. 監察委員會는 大統領直屬機關이었으나 별다른 成果가 없자 1955年에는 司正委員會로 대체되었다. 第2共和國에서는 다시 監察委員會로 부활되어 國務總理 直屬機關으로設置되었으며 監査院 發足과 함께 흡수·통합되었다.

1963年 수립된 監査院은 憲法機關으로서 職務上 獨立權을 가진 合議制機關이다. 監査院의 조직은 監査委員會와 事務處의 兩機關으로 대별된다.<sup>(75)</sup>

監査委員會는 院長을 포함한 7인의 監査委員으로 구성되며 監査院의 議決·決定機關으로서 주요事項을 관할한다.<sup>(76)</sup> 監査院長은 任期 4年으로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고 事務處와 所屬公務員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監査委員會會議는 合議體機關으로서 週1回 定期會를 개최하며 議決은 在籍委員의 過半數贊成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事務處는 事務總長 1人과 事務次長 1人 외에 監査職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監査의 實際活動을 수행한다. 監査擔當組織은 4局 3室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局은 政府部處를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다.<sup>(77)</sup>

(73) 内部統制裝置 및 그 機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① 安海均, 現代行政學, pp. 395~397. ② 朴東緒 安海均, 行政統制論, 第4章 참조.

(74) 制憲憲法 第95條 참조.

(75) 監査院法 第3條.

(76) 監査委員會의 權限은 다음과 같다.

- ① 計算의 確認에 관한 事項
- ② 变更책임의 有無 및 判定에 관한 事項
- ③懲戒 및 問責處分의 要求에 관한 事項
- ④ 改善要求에 관한 事項
- ⑤ 再審權에 관한 事項
- ⑥ 決算検査報告 및 隨時報告에 관한 事項
- ⑦ 會計關係法令의 制定, 改廢 및 解釋에 관한 意見陳述에 관한 事項
- ⑧ 監査院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77) 事務處의 各 機構別 分擔內容은 다음과 같다.

## 2) 監査院에 의한 行政統制의 實際

監査院에 의한 行政統制의 實際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監査對象機關의 增加趨勢를 본 후, 監査活動의 實態, 監査結果의 處理實態를 고찰하기로 한다.

中央行政部處 및 그傘下團體, 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이 監査對象機關이 되는데 必要的 監査對象은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年 29,806個 機關, 1981年에는 38,403個 機關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機關의 豐算規模도 6년간 年平均 6조 6,879억 원씩 증가하였으므로 總豫算規模는 53조 8,405억 원에 이르렀고 이들 機關의 財產은 31조 3,447억 원으로 評價된다. <sup>(78)</sup>

<表-3> 監査院 監査의 必要的 監査對象 增減表

監査 對象	年份							6年間增減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增減量	增加率
機 關		29,806 億원	30,783	31,415	33,643	36,479	38,403	8,497	129%
豫 算		137,130 名	167,758	216,200	307,206	413,586	538,405	401,275	393
人 員		543,796 名	572,713	563,620	622,089	679,815	691,781	147,185	127
監査人 力		630 名	663	663	663	687	696	66	110

資料 監査院, 1981年度 監査年報에 의거 再作成.

이에 의해 監査院의 監査人力은 1976年的 630명에서 1981년 696명으로 66명 증가함에 그쳤으며 이는 監査對象機關의 數의 增加率에 훨씬 미달되는 수치이다. 더구나 이 가운데 실제 監査에 동원될 수 있는 人力인 監査職은 400여명에 불과하다. <sup>(79)</sup>

그러나 이러한 豫算과 人力에도 불구하고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監査活動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4> 監 査 實 繢

單位: 億원 · 名

區分	年度	1979		1980		1981		1982		1983	
		措置金額	人員	措置金額	人員	措置金額	人員	措置金額	人員	措置金額	人員
		124	382	80	279	192	119	302	409	434.3	398

資料 1982年度 監査年報 및 監査 1984.

첫째, 第1局은 經濟部處와 政府投資機關을 담당하며 둘째, 第2局은 文教, 保安, 國稅, 關稅 등의 部處를 監察하고

세째, 第3局은 內務, 農水產, 地方自治團體를 담당,

네째, 第5局은 監察部門을 담당하는 特殊專門監察機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있다.

朴東緒·安海均, 行政統制論(서울大學校 出版部, 1982), p. 111.

(78) ① 監査院, 1982年 監査年報, ② 監査院, 1983年度 業務現況.

(79) 朴倉圭, “監査院에 거는 國民의 期待”, 監査院, 1983, pp. 83~85.

監査院의 監査方法은 크게 書面監査와 實地監査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書面監査에 동원되는 人員數가 대폭 감소하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sup>(80)</sup>

그 이유는 中央行政部處의 自體監査인 行政監査가 強化되어 그 實效를 기하고 있다는 點과 監査院이 書面監査보다 實地監査에 더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한다. 實地監査의 對象機關도 監査委任 또는 代行에 힘입어 대폭 감소하였으나 陳情書, 審查請求, 再審議事項 등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지나친 合法性爲主의 監査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監査院이 가진 두가지 權限 가운데 職務監察은 時代的 狀況에 따라 増減이 반복되고 있으며 會計監査의 경우 중점이 주어지는 부분은 租稅收入業務, 豐算의 編成 및 支出業務, 工事執行業務, 物品 및 財產의 買入 등인 반면 職務監察의 경우에는 規制行政事務에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sup>(81)</sup>

<表-5>에 나타난 監査의 結果處理狀況을 보면 制度, 環境 등의 要因보다는 擔當者를 중심으로 한 수 數爲主의 監査便宜主義가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指示나 指揮能力을 결여한 上官에 대해서는 주로 注意·是正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면 下位職級에 대해서는 處罰爲主의 치리를 하고 있다. 즉 監査가 下位職級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결과적으로 監査의 중점이 주어진 指針의 준수여부에 치중하는 適法性 監査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表-5>

비위 요인 처분 요구	擔當者				監督者			制度				環 境	計		
	不誠實 (고의적 작위 과실)	職務怠慢 (고의적 무작위 과실)	能不足 (과실)	力業務處理疏忽 (경과 실)	小計	不當指示 不實	指導能力 缺如	指揮能力 缺如	法令上矛盾 上矛盾	行政制度上矛盾 上矛盾	豫算上缺陷 上缺陷	機關間相互協助不足 相互協助不足			
辨償判定	18	4			22									22	
懲戒問責	71	46			117		7		7					124	
是正	30	46	73	171	320		29		29		1	2		352	
注意	50	97	87	317	551	2	77		79	1	11	3	6	651	
改善									45	101			146	146	
計	169	193	160	488	1,010	2	113		115	46	113	5	6	170	1,295

資料：監査院，監査年報，1982。

## 2. 行政監査에 의한 行政統制

監査院監査가 合法性·合目的性 및 能率性에 입각하여 第3者的 입장에서 각 部處의 업무를 監査·發覆함으로써 行政의 責任性을 보장하는 事後統制임에 비해서 行政監査는 각

(80) 書面監査에 동원된 연인원은 1977년 38,930명으로부터 1982년의 경우 13,554명으로 감소되었다. 監査院, 國政과 監査, 1983, pp. 380~381.

(81) 尹永一, 監査資料의 分析을 통한 監査行態의 特徵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pp. 40~46.

部處가 自律統制, 自體是正을 그 目的으로 監查院監查보다 事前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그 差別을 달리하고 있다.

### 1) 行政監查의 目的

行政監查란 각급 行政機關이 當該機關 또는 그 下級機關의 業務運營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行政策議의 모든 段階에서의 適正運營 여부와 公務員의 紀綱違背事項을 檢討·分析하고 그에 대한 是正 또는 改善策을 마련하는 行爲를 말한다.

즉 行政監查란 行政機關內部의 業務運營에 있어서 自律統制와 自己反省을 통하여 스스로 잘못을 是正하고 行政運營上의 改善策을 마련하는 作用으로서 단순히 개개의 非違·誤謬事實의 橋發만을 主目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行政監查의 궁극적 目的是 각 行政機關이 業務의 運營實態를 調査하여 政府의 施策과 方針이 下部行政組織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침투되어 效率的으로 執行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不合理한 점을 是正하고 行政運營의 適正 能率化 및 豫算의 效率的 使用과 그 改善을 기함과 동시에 公務員의 紀綱維持를 도모하는 차 함께 있다.

이러한 目的이 달성됨으로서 기대되는 效果는 直接的인 것과 間接的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直接的 效果로는 발생 가능한 事故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監查를 행함으로서 不正이나 非違, 誤謬 등을 일소하고 각종 會計處理上の 질서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 또한 行政機關 스스로의 自律統制와 自體是正의 氣風을 조성하여 行政運營의 改善을 촉진하고, 公務員의 行態의 側面에서의 바람직한 倫理를 확립하게 하여 紀綱刷新을 도모하는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行政監查의 間接的 效果로는公正하고 嚴正한 監查로 인해 行政의 合法性과 合目的性을 보장하고, 동시에 國民으로부터의 信賴度를 提高시킴으로써 전진한 行政風土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行政機關 自體에서 실시하는 行政監查에 대한 信賴度가 높아질 때 監查院監查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효과적인 内部統制가 기대될 수 있다.

### 2) 行政監查에 의한 行政統制의 實際

行政監查의 實際를 알아 보기 위해 署하단체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内務部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sup>(82)</sup>

内務部의 行政監查는 中央에 의한 地方統制의 根幹을 이룬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地方行政機關에 대한 監查는 5·16軍事革命 이전에는 監查院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 후

(82) 行政監查의 實제 운영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各 部處別 自體監查의 實態를 비교·분석하여야 하나 이를 監查資料는 内務部를 제외한 경우 거의 公開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기서는 内務部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自體監査規定이 制定되면서<sup>(83)</sup> 内務部를 주축으로 各部處가 自體統制를 실시하였으나 그결과 監査對象幾關으로부터 빈번한 監査와 分散된 統制로 인해 不便과 業務支障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의 地方行政監査는 監査院監査 외에 合同監査 및 内務部 自體監査가 실시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院과 内務部의 監査實績을 指摘件數, 財政上措置 및 身分上措置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表-6>에 나타난 것과 같다.

<表-6> 監査院監査와 行政監査 實績比較

監査機關	行政上措置		財政上措置		身分上措置	
	件數	比率	金額	比率	人員	比率
計	12,193件	100%	6,856百萬원	100%	3,117名	100%
内務部	10,156	83	3,343	49	2,416	78
監査院	2,037	17	3,512	51	701	22

註) 上記 數值는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合計임.

資料：監査院 및 内務部所管 資料에 의거 作成.

즉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實績値를 보면 行政上措置의 경우 内務部監査가 10,156件으로서 監査院監査의 2,037件에 비해 약 5배의 監査實績을 보이고 있으며, 身分上措置는 2,416名과 701名으로 監査院實績의 3.5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財政上措置는 오히려 監査院監査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内務部의 自體監査가 監査院監査에 비해 違法性과 形式性에 더욱 치중함으로써 監査의 效率性은 소홀히 함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確認行政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指導方間은 監査와는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一線機關의 경우 이를 監査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表-7>에 나타난 年度別 地方公務員定員에 對比한 非違公務員의 比率을 보면 1976年을 頂點으로 차츰 감소하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 表를 근거로 公務員非違가 감소된 것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1975년 이후 :個年間은 庶政刷新이 國家安保的 次元에서 다루어져 「不正·不敗·社會不條理는 共產黨과 동일시되므로 근본적으로 是正될 때까지 늦추지 말도록」<sup>(84)</sup> 한 大統領指示로 폭발적인 摘後件數의 증가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8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80년 이후 현재는 증가되는 추세로 판단된다. 1981년이 가장 낮은 比率을 기록한 것은 당시 非違公務員의 懲戒責任을赦免하였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第5共和國 成립 이후 강화된 司正活動으로 非違公務員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83) 闕令 第532號, 1962. 3. 10.

(84) 文化省報部, 庶政刷新, 1976 참조.

〈表-7〉 年度別 地方公務員定員 對 非違公務員의 比率

年 度	定 員	問 責 公 務 員	問 責 比 率
平 均	10,496名	3,167名	3.0%
合 計	1,004,959	31,668	3.0
1973	82,068	2,495	3.0
1974	87,372	1,926	2.2
1975	93,519	4,231	4.5
1976	96,167	6,998	7.3
1977	97,700	4,070	4.2
1978	100,132	3,194	3.2
1979	106,804	1,965	1.8
1980	109,362	2,189	2.0
1981	135,472	1,655	1.2
1982	136,363	2,945	2.2

資料：內務部，地方廳公務員非違統計分析。1983.

監査院이 의한 監査處理에서 언급하였듯이 高位職에 대한 처벌이 全無하다시피한 것은 内務部의 行政監査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인바 그 原因은 監査者の 職級이 낮은 데에 기인한다.

## VII. 制度와 效果分析에 대한 評價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行政統制을, 外部統制와 内部統制로 나누어 制度的 裝置를 중심으로 歷代政權下에서의 實際를 간략하게 比較 고찰해 보았다. 이들 統制裝置는 行政體制가 環境으로부터의 要求投入을 받아들이거나 行政機關 스스로 政策을 決定하고 執行하는 過程이 目標指向의인가, 適法한가 또는 公正하고 效率의인가를 끊임없이 監視함으로써 잘못을 찾아내거나 是正措置를 하여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行政統制의 制度와 運營이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行政統制가 점차 機能上의 弱化現象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서 第4共和國末期부터 심화되어 오늘날 「不信風潮」로 일컬어지고 있는 官과 民의 不信, 政黨과 行政府의 不信, 國會에 대한 國民의 不信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統制라는 觀點에서 볼 때 각각의 統制裝置가 제 機能을 발휘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겠다.

本章에서는 앞에서 分析한 각 統制裝置의 機能을 크게 外部統制裝置와 内部統制裝置로 나누어 각각을 評價하기로 한다. 물론 각 統制裝置는 그 制度의 本質의 屬性에 기인하는

限界點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問題點을 지적하기로 한다.<sup>(85)</sup>

### 1. 外部統制裝置의 評價

外部統制裝置가 가지고 있는 問題點은 근본적으로 이들 統制裝置의 效率性을 沮害하는 法的規制 및 缺陷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外部統制裝置와 關聯된 法規의 制定이 行政府와 執權黨 및 野黨間의 對話와 討論을 통한 政治的 協商에 의하지 않고, 執權黨의 萊利와 行政上의 便宜主義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국단적으로는 執權黨이 일방적 으로 또는 變則的 方法까지 동원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편 外部統制裝置의 活動에 諸요한 情報의 獨占이 어려운 점도 外部統制의 效率性을 저해하는 원인이고 있다.

官僚社會의 秘密主義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은 아니지만<sup>(86)</sup> 우리의 경우 公開되어도 좋은 資料들을 對外秘 등으로 취급하는 현상이 과다하기 때문에 問題가 된다. 예를 들면 自體監查時에 發되는 所屬公務員의 非違事實을 對外秘로 취급하고 稅金制度變更 등 國民生活에 直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政策決定도 與黨과의 合意나 國務會議 議決이 거쳐지기 전까지는 秘密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sup>(87)</sup>

外部統制와 關聯하여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問題點은, 本論文 第2章 行政統制의 必要性에서 強調한 바와 같은 官僚權의 權力源에 대항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官僚들이 가진 恒久性·專門性·強制權力의 合法的 獨占 및 裁量權은 官僚의 權力濫用을 야기시키는 充分條件이라 할 수 있다. 外部統制機關의 경우 이러한 要素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官僚制와 對等한 地位에서 行政府를 統制할 수 없게 된다. 外部統制裝置 가운데 行政府와 並列적 동질적인 權力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議會는 이러한 점에서 行政統制의 實效性를 기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裝置로 판단된다. 다만 行政府의 專門性과 比較할 때 議會는 다소 落後되어 있으나 이 점은 議會의 立法補助機構를 擴大·強化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議員의 專門分野를 고려한 常任委員會構成도

(85) 각국의 統制裝置가 가지는 일반적인 缺陷 내지는 限界點에 대해서는 다음 文獻을 참고할 것.

( ) 議會·司法府·選舉·政黨·利益集團·言論 등 外部統制裝置의 限界點은, 安海均, “行政統制의 史的評價”, “國民에 의한 行政統制”, “議會에 의한 行政統制” 등을 참조하고,

( ) 監察院監查·行政監查 등 内部統制裝置의 限界點은 安海均, 現代行政學, 및 朴東緒·安海均, 行政統制論, 참조.

(86) 美國의 경우 冷戰, 經濟規制의 증가, 人事行政機關 및 官僚制의 規模와 複雜性 확대, 分業體制 및 友好的인 資料만을 公開하는 公報室 등으로 外部機關에 대한 資料公開의 拒否는 심각해지고 한다.

Francis E. Rourke, “Secrecy in American Bureaucra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LX XII(December, 1957), pp. 544~551 참조.

(87) 對外秘文書 가운데 一般文書로 취급해도 좋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調査에 따르면 應答者 가운데 公務員의 34%, 諸問委員의 62.5%가 많거나 아주 많다고 答하였다. 東亞日報, 1984. 3. 26 참조.

절실히 청된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效果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政黨의 경우는, 政策政黨의指向이口號에 그치지 않도록各政黨이政策機構를擴大·改編함으로써行政統制의效果性을提高시키도록해야 할 것이다. 司法府는事後統制라는限界點을 지니고 있으나違規·違法한法規의審查權을충실히活用함으로써制約點을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言論은國民의알權利를充足시켜줄수 있는가장유리한位置에있다는점에서情報의獨占에기인한官僚制의專門性과對等한地位에있다. 그러나현재의言論基本法이言論의社會的責任만을지나치게強調한나머지言論을間接的으로規制하고있는것은是正되어야할것이다.<sup>(88)</sup> 반면에利益集團은特定分野에관한官僚制의專門性과對等한위치에있지만우리나라의경우企業倫理에의한自己統制가결여되어있으므로政府의公正과誠實을토대로interestgroup間에interestinpu의均衡화가달성되도록해야 할것이다.

## 2. 内部統制裝置의評價

監查院監査와行政監査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現象으로서制度보다는人間爲主의合法監査와高位職보다는下位職處罰爲主의監査行態를지적하였다. 이러한內部統制裝置의問題點들은다음과같은原因때문으로볼수 있다.

첫째로지적할수있는것은職業公務員制가설질적으로確立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職業公務員制가 확립되기 위해서는公務員의身分保障,公職에대한높은社會的評價,適正한報酬및年金制度의確立, 유능한人材의確保등의要件을갖추어야한다.<sup>(89)</sup> 그런데우리의경우公務員에대한身分保障이되어있지않고報酬面에서一般私企業體에훨씬미달도므로職業公務員制를指向하면서도實質的으로는이制度가定着되지못한상태에있다. 특히內部統制와관련하여公務員의身分保障은가장커다란制約要因이되고있다. 즉官僚의專門家的能力과이러한能力외에個人과上官과의단순한信任關係는昇進과轉移에서동일한比重을차지하거나官僚의專門性을우선시해야함에도實際는그렇지않다.

따라서公務員社會에서는上命下服<sup>(90)</sup>이最優先視되고命令과規則(rules and orders)을混同하며執權黨에편파적인統制結果를가져온다.<sup>(91)</sup>

둘째는公職社會에健全한倫理規範이결여되어있음을지적할수있다.

(88) 言論基本法에의한規制외에도文公部弘報調整室에서는體制弘報등중요한問題에대해서는掲載與否및몇면,몇段으로掲載하라는指示를具體的으로하고있다.“第23回國家政策[미나特輯]”,發展政策研究第11號,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1983,p.64.

(89) 李雲泰·安海均,韓國政府論(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1983),pp.158~159참조.

(90) 上장단적인예를公務員宣書에서찾을수있다.즉公務員宣書第1條는上司의命슴에對應服從해야함을규정함으로써公務員의過剩忠誠현상을가속하는작용을한다.

(91) 이러한觀點에의하면最近政策學에서論議되는政策執行에서의官僚抵抗問題는우리나라에해당되지않는다고볼수있다.오히려우리의경우는지나친服從즉過剩忠誠이問題된다고하겠다.內務部實務者와의面談에따르면一線機關에示達되는公文의作成時表現에中을기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過剩忠誠現象이두드러진다고한다.

行政體制는 全體社會體制(societal system)의 下位體制로서 그 構成員은 社會化過程을 통해 그 社會의 支配的인 規範을 內面化한 자들이다. 우리나라의 社會文化는 일반적으로 家族主義·權威主義·形式主義·階序主義 등을 지적하는 學者들이 많은데, 이러한 영향을 받은 公務員이 公職社會에 들어갈 경우 業務關係·資源關係·目標 및 發展規範關係·環境關係 등에서 독특한 行動樣式 즉 行政文化가 褻然하게 된다.<sup>(92)</sup>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身分保障의 缺如로 官僚社會에 뚜렷한 論理規範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問題이다.

公職社會의 健全한 倫理規範은 公務員倫理憲章이나 公職者財產登錄法 등의 人爲的인 制度로는 확립될 수 없다. 즉 公務員이 公職者로서의 責任意識을 가질 때만이 바람직한 行動規範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責任意識이 있기 위해서는 公務員個個人이 자신의 職位에 相應하는 權限을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權限의 下部委讓은 健全한 倫理規範의 確立을 위한 必須要件이라 하겠다.

요컨대 公務員의 身分保障 및 職業倫理의 확립이先行되어야 内部統制는 實效性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 VII. 結　　言

지금까지 行政統制의 理論을 檢討해 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實際는 어떠한지를 分析하였다.

行政統制의 必要性은 官僚制의 本質의 屬性에서 찾을 수도 있고 官僚制의 運營過程에서 나타나는 逆機能的側面으로부터 導出할 수도 있다. 그리고 行政統制라는 概念이 여러 次元의 複合體임을 규명하고 概念의 再定立을 시도함으로써 類似概念들과 區分하였다.

行政統制는 결국 行政責任을 확보하기 위한 手段이므로 「行政統制의 딜레마」로 일컬어지는 內的 責任論과 外的 責任論을 詳述하고 이러한 主張이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論하였다.

內的 責任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内部統制라면 外的 責任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外部統制이다. 本研究에서는 이 區分에 따라 우리나라의 行政統制裝置를 그 制度와 機能面에서 分析하였다.

그리고 外部統制裝置와 内部統制裝置가 그 實效性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外部統制裝置는 각 統制主體의 活動을 規律하는 法規의 制定上問題點, 情報源에의 接近이 어렵다는 점 및 行政官僚와 동등한 權力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을 問題點으로 들었고, 内部統制裝置는 職業公務員制 未確立과 公職社會의 倫理規範缺如 때문에 制約點이 있음을

(92) 行政文化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接近方法에 대해서는 金雲泰·安海均, 前接書, pp. 212~232 참조.

論하였다.

결론적으로 外部統制裝置와 内部統制裝置는 상호 均衡된 상태에서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前者가 지나치게 強化될 경우 行政은 無力化하게 되고, 後者が 지나치게 강화되면 國民의 信賴·支持를 외면하는 行政府의 獨走現象을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第2共和國과 第4共和國에서 우리가 경험한바 있다. 따라서 兩者は 相互補完關係를 유지하면서 均衡있는 調和狀態를 指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形상의 制度만으로는 行政統制의 實效性를 달성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制度와 現實間의 乖離를 分析·評價·是正함으로써 信賴하는 行政, 正義로운 社會, 名實相符한 國民統合을 이룩해야 한다.